

#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83
----------	-----

2019년 9월 6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
-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- 상정일자 :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19년 8월 30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 (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)

### 1. 제안이유

-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·교육·의료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북권지역의 외국인지원시설로,
-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,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 제3항에 의거

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16길 23
- 시설규모 : 23m<sup>2</sup>(월곡종합사회복지관 2층, 사무실)
- ※ 사무실외 기타 시설은 복지관과 공동 사용
- 주요시설 : 사무실, 상담실, 프로그램실(한글교실, 컴퓨터교실 등)
- 인력운영 : 5명(센터장 1명, 과장 1명, 대리 2명, 사회복지사 1명)

### 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20. 1. 1.~ 2022.12.31.)
- 위탁업무
  -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관리 · 운영 및 사업 일체
  - 노무, 법률, 생활 등 상담지원
  - 한글 · 컴퓨터 교육 등, 의료지원
  - 문화체험 행사 등
- 소요예산 : 253,011천원('19년도 )
  - 산출근거 : 인건비 171,576천원, 운영비 11,571천원, 사업비 69,864천원
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※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해당없음(재위탁사업 비대상)

#### 다.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

-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 · 교육 ·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.
- 다양한 기관(병원, 경찰서, 법률사무소, 노무사, 봉사자, 종교단체 등)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.
-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 · 교육 · 의료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북권지역의 외국인지원시설로,
-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,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제20조

**제20조(업무의 위탁)**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·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민간위탁 예산편성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: 외국인노동자센터운영 재계약·재위탁 추진계획(외국인  
다문화담당관-5679, 2019.5.9.)

### III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# 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민간위탁 추진 개요

- 동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동의안 4건은 각각 성북, 강동, 은평, 양천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에 6년이 경과하여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 4조의3(이하 “민간위탁조례”라 함)<sup>1)</sup>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<sup>2)</sup>을 추진하고자,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※ 「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」의 시행('19.3.28.)으로 조례상 ‘근로(勤勞)’용어 ‘노동(勞動)’으로 일괄 변경되면서,  
2019.7.1. 일자로 시설명칭이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센터로 변경됨.

- 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 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 
<개정 2019. 3. 28.>  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9. 3. 28.>  
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 
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9. 3. 28.>
- 2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4. "재위탁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  5. "재계약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-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노무, 법률, 생활 등 상담지원, 한글·컴퓨터 교육 및 의료지원, 문화체험 행사 등임.
- 외국인노동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함)는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18조<sup>3)</sup>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외국인 지원시설의 하나로 「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」 제11조<sup>4)</sup>와 상기의 동 조례 제7조<sup>5)</sup>에 따라 서울시 재한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각종 서비스를 지원함.
  - 동 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업은 순수 시비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- 서울시외국인지원시설 가운데 ‘외국인근로자센터’는 서울시에 거주

- 
- 3)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18조(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)
    -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(이하 "지원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    -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·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 - 4) 「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」 제11조(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
  - 5)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7조(지원의 범위)
    -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  1.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 등
      2.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 등
      3.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
      4. 각종 문화·체육행사의 개최
      5. 외국인·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
      6.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·교육사업
      7.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
      8. **외국인 근로자 권리 및 인권 보호**
      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불편·부당사항 해소로 권익보호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하기 위한 특화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, 현재 서울시에는 금번 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성북, 강동, 은평, 양천 4개 센터를 포함하여 총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.

### <외국인노동센터 운영 현황>

연번	시설명	운영기관	소재지	규모	인력	개설일	'19년 예산 (백만원)	비고 (위탁기간)
1	성동	(사)노동인권회관	성동구 무학로	452m <sup>2</sup>	5명	'01.12.14	326	서울시소유단독시설 (2017.1.1~2019.12.31)
2	성북	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	성북구 오페신로	23m <sup>2</sup>	5명	'09.04.30	253	복지관 활용 임차 (2017.1.1~2019.12.31)
3	금천	사회복지법인 티브크복지재단	금천구 가산로	65m <sup>2</sup>	5명	'07.05.04	243	복지관 활용 임차 (2017.1.1~2019.12.31)
4	양천	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	양천구 목동동로	70m <sup>2</sup>	5명	'09.04.28	258	복지관 활용 임차 (2017.1.1~2019.12.31)
5	은평	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	은평구 은평로	37m <sup>2</sup>	5명	'08.03.13	251	복지관 활용 임차 (2017.1.1~2019.12.31)
6	강동	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	강동구 성안로	46m <sup>2</sup>	5명	'08.03.15	266	복지관 활용 임차 (2017.1.1~2019.12.31)

- 6개 센터의 민간위탁 추진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.

### <민간위탁 추진 현황>

- **성동** : '01.12.14~'15.2.28 성동구 직영운영 후 1차 공모('15.3.1~'16.12.31.), 2차 재계약('17.1.1~'19.12.31.)
- **성북** : 1차 ~ 5차 연단위 위탁('09.4.30~'13.12.31), 6차 공모('14.1.1~'16.12.31.), 7차 재계약('17.1.1~'19.12.31.)
- **금천** : 1차 ~ 6차 연단위 위탁('08.3.13~'14.2.28), 7차 공모('14.1.1~'16.12.31.), 8차 공모('17.1.1~'19.12.31.)
- **양천** : 1차 ~ 5차 연단위 위탁('09.4.28~'13.12.31), 6차 재계약('14.1.1~'16.12.31.), 7차 공모('17.1.1~'19.12.31.)
- **은평** : 1차 ~ 7차 연단위 위탁('07.5.1~'13.12.31), 8차 재계약('14.1.1~'16.12.31.), 9차 재계약('17.1.1~'19.12.31.)
- **강동** : 1차 ~ 6차 연단위 위탁('08.3.13~'13.12.31), 7차 재계약('14.1.1~'16.12.31.), 8차 재계약('17.1.1~'19.12.31.)

- 금번 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4개 센터 중 양천센터만 재계약 대상으로 이는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임.

### <동의대상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>

구분	수탁법인	현 수탁법인의 위탁기간	위탁방법
성북	진각복지재단	'14.1.1~'19.12.31.(6년)	재위탁(공모)
강동	대한사회복지개발원	'08.3.13.~'19.12.31.(11년9개월)	재위탁(공모)
은평	사회적협동조합	'08.1.1.~'19.12.31.(12년)	재위탁(공모)
양천	티뷰크복지재단	'17.1.1~'19.12.31.(3년)	재계약

- 한편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의 경우, 현재 위탁하고 있는 진각복지재단의 최초 위탁일이 '14.1월로 재계약 가능 기간(10년) 내에 있으나, 진각복지재단은 타 복지시설 운영시 위법적 운영으로 특별 점검을 받음은 물론, 관계자의 성추행 등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재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, 재위탁 추진하게 되었음.

- ※ 진각복지재단 직원 2명이 진각종 총인(최고지도자 現김상균)의 장남에게 성추행 당하는 사건 발생으로 언론보도('18.12월, 한겨례 21 등)된 바, 이후 공익체보로 '18. 8월 서울시 복지정책과 주관 「진각복지재단 산하 시설」 특별지도점검이 실시되었으며,
- ※ 그 결과 종교활동 강요, 인사권 남용 등의 사유로 '성북구립 월곡종합사회

복지관' 수탁해지 처분 통보 받았으나,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 
서는 지적사항 없음.

※ 이후 진각복지재단이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수탁포기 의사표시로 복지관의  
수탁자가 변경되었으며, 관련 사건 소송이 진행 중임.

###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와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<sup>6)</sup>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「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」 제11조<sup>7)</sup>와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<sup>제7조<sup>8)</sup>에 재한외국인의 생</sup>

6)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7) 「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」 제11조(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

8)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7조(지원의 범위)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 등
2.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 등
3.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
4. 각종 문화·체육행사의 개최
5. 외국인·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
6.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·교육사업
7.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
8. 외국인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

활지원 및 외국인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,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교육 등 각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,

- 「민간위탁조례」 제4조<sup>9)</sup>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  -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노무, 법률, 출입국, 산재, 의료, 생활 관련 상담, 한국어 교육,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에 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- 또한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18조<sup>10)</sup>에서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,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.

---

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9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**
 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 삭제
- 10)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18조(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(이하 "지원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·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#### 4 종합 검토 의견

- 동 위탁 사무는 서울시 재한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노무·법률상담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,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.
- 이에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11명, 전원 찬성】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983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·교육·의료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북권지역의 외국인지원시설로,
- 나.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,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페산로 16길 23
- 시설규모 : 23m<sup>2</sup>(월곡종합사회복지관 2층, 사무실)  
※ 사무실외 기타 시설은 복지관과 공동 사용
- 주요시설 : 사무실, 상담실, 프로그램실(한글교실, 컴퓨터교실 등)
- 인력운영 : 5명(센터장 1명, 과장 1명, 대리 2명, 사회복지사 1명)

### 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20. 1. 1. ~ 2022.12.31.)

- 위탁업무
    -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관리 · 운영 및 사업 일체
    - 노무, 법률, 생활 등 상담지원
    - 한글 · 컴퓨터 교육 등, 의료지원
    - 문화체험 행사 등
  - 소요예산 : 253,011천원('19년도 )
    - 산출근거 : 인건비 171,576천원, 운영비 11,571천원, 사업비 69,864천원
  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※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해당없음(재위탁사업 비대상)

#### 다.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

-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 · 교육 ·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.
- 다양한 기관(병원, 경찰서, 법률사무소, 노무사, 봉사자, 종교단체 등)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.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0조

제20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· 단체 · 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## 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민간위탁 예산편성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: 외국인노동자센터운영 재계약·재위탁 추진계획  
(외국인다문화담당관-5679, 2019.5.9.)

※ 작성자 :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 진희원 (☎ 2133-5078)